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5.

발 의 자: 황정아 · 위성곤 · 한민수

이재관 • 박지원 • 안태준

임광현 · 장철민 · 박정현

서왕진 · 조승래 · 강준현

신정훈 · 조계원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젖병, 젖꼭지, 이유식 및 유축기 등육아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포함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.

그러나 해당 육아용품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재화이므로, 양육자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젖병, 젖꼭지,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1. 영유아용 기저귀, 분유(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, 젖병, 젖꼭지, 이유식 및 유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용품(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<u>-</u>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 및 제1	
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	
호,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	
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	
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	
하고,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	
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	
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	
용하며, 제9호는 2023년 12월 3	
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	
고,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	
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	
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(액	11. 영유아용 기저귀, 분유(액

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)

12. · 1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한다), 젖병, 젖꼭지, 이유식 및 유 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육아용품(「부가가치세 법」 제26조에 따라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 한다)

12. • 1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